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2025. 12.

계명대학교 교무처

1. 학칙 개정(안)

- 가. 고등교육통계 기준에 따른 휴학 종류 및 명칭 통일
- 나. 2027학년도 교육편제 개편에 따른 개정
- 다. 2026학년도 융합전공 신설, 폐지 및 모집중지
- 라. 장학금 지급 전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마. 원격교육원 폐지에 따른 개정
- 바. 신규 조문표

발의부서: 교무·교직팀

현 행	개 정(안)	비고
<p>제4조(학생정원) ① 우리 대학교의 학생정원은 “<u>별표 1</u>”과 같다. ② ~ ③ (생략)</p> <p>제23조(휴학) ① 질병, 군입대 또는 부득이한 가정사정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계속 수업할 수 없는 학생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할 수 있다.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p> <p>② 우리 대학교의 교의 또는 지정의사가 건강상 수학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학생에 대하여 총장은 휴학을 명할</p>	<p>제4조(학생정원) ① 우리 대학교의 학생정원은 “<u>별표 1</u>”과 같다. 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23조(휴학) ① <u>휴학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해당 사유로</u> 1개월 이상 계속 수업할 수 없는 학생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할 수 있다. <u>1. 가사휴학: 개인 사정에 따른 휴학</u> <u>2. 군입대 휴학: 군입대에 따른 휴학</u> <u>3. 질병휴학: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 또는 질병에 따른 휴학</u> <u>4. 창업휴학: 창업에 따른 휴학</u> <u>5. 육아휴학: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휴학</u> <u>6. 기타휴학: 국가고시 합격자의 연수원 교육을 위한 휴학 등</u></p> <p>② 우리 대학교의 교의 또는 지정의사가 건강상 수학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학생에 대하여 총장은 휴학을 명할</p>	<p>2027학년도 학생정원표 추가</p> <p>자구 수정</p> <p>고등교육통계 기준에 따른 휴학 종류 및 명칭 통일</p>

현행	개정(안)	비고
<p>수 있다.</p> <p>③ 휴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p> <p>제24조(휴학기간) ① <신 설>휴학은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입대로 인한 휴학기간은 예외로 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학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추가 휴학기간은 1년(창업에 의한 휴학기간은 최대 2년) 또는 연수원 교육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1.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p> <p>2. 국가고시 합격자의 연수원 교육을 위한 휴학</p> <p>3.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휴학</p> <p>4. 창업에 의한 휴학</p> <p>제45조(졸업인정과 학위수여) ① 소정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기준을 충족한 학생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u>별표 2</u>의 학사학위를 수여한다.</p> <p>② (생략)</p> <p>제58조(지급중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휴학, 퇴학, 제적 또는 징계 처분된 경우에 미지급분의 장학금은 지급하지 않는다.<신 설></p>	<p>수 있다.</p> <p>③ 휴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p> <p>제24조(휴학기간) ① <u>가사</u>휴학은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입대로 인한 휴학기간은 <u>별도로 정한다</u>.</p> <p>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학은 <u>통산 6학기휴학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u> 휴학기간은 1년(<u>창업휴학</u>은 최대 2년) 또는 연수원 교육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1. <u>질병휴학</u></p> <p>2. <u>육아휴학</u></p> <p>3. <u>창업휴학</u></p> <p>4. <u>기타휴학</u></p> <p>제45조(졸업인정과 학위수여) ① 소정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기준을 충족한 학생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u>별표 2</u>의 학사학위를 수여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8조(지급중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휴학, 퇴학, 제적 또는 징계 처분된 경우에 미지급분의 장학금은 지급하지 <u>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 사항은 「장학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u>.</p>	<p>휴학 구분 명확화</p> <p>휴학 통산 기간 예외 기준 명확화</p> <p>고등교육통계 기준에 따른 휴학 종류 및 명칭 통일</p> <p>2026학년도 융합전공 폐지에 따른 수정</p> <p>장학금 지급 중지 예외 사항</p>

현 행	개 정(안)	비고
<p>제85조(학위수여 요건)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점은행제로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학생이 우리 대학교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p> <p>1. 고등학교 졸업자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교양 30학점 이상, 해당 전공 60학점 이상 등 총 14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140학점 중 84학점 이상을 우리 대학교와 우리 대학교 계명시민교육원 또는 원격교육원에서 취득해야 함</p> <p>2. 학사학위 취득자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해당 전공 48학점 이상을 우리 대학교와 우리 대학교 계명시민교육원 또는 원격교육원에서 취득해야 함</p> <p>② 우리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우리 대학교 정규교육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시간제등록제를 통하여 취득한 학점, 우리 대학교 계명시민교육원 또는 원격교육원에서 취득한 평가인정학습과목의 학점, 독학사시험면제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을 포함한다.</p> <p>③ 우리 대학교와 우리 대학교 계명시민교육원 또는 원격교육원에서 취득한 학점 중에는 전공 18학점 이상과 평가인정학습과목 18학점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④ 평가인정학습과목의 학점은 계명시민교육원에서 이수한 학점, 원격교육원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구분하며, 각 교육원에서 학위를 수여시 해당 교육원 학점만으로 학위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p> <p>⑤ (생략)</p>	<p>제85조(학위수여 요건)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점은행제로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학생이 우리 대학교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p> <p>1. 고등학교 졸업자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교양 30학점 이상, 해당 전공 60학점 이상 등 총 14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140학점 중 84학점 이상을 우리 대학교와 우리 대학교 계명시민교육원<삭 제>에서 취득해야 함</p> <p>2. 학사학위 취득자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해당 전공 48학점 이상을 우리 대학교와 우리 대학교 계명시민교육원<삭 제>에서 취득해야 함</p> <p>② 우리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우리 대학교 정규교육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시간제등록제를 통하여 취득한 학점, 우리 대학교 계명시민교육원<삭 제>에서 취득한 평가인정학습과목의 학점, 독학사시험면제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을 포함한다.</p> <p>③ 우리 대학교와 우리 대학교 계명시민교육원<삭 제>에서 취득한 학점 중에는 전공 18학점 이상과 평가인정학습과목 18학점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p> <p><삭 제></p> <p>⑤ (현행과 같음)</p>	<p>처리 근거 마련</p> <p>원격교육원 폐지에 따른 삭제</p> <p>동조 ③항의 범 위에 포함됨에 따라 삭제</p>

현행	개정(안)	비고
<p>제86조의1(학위수여) ① (생략)</p> <p>② 학점은행제로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학생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u>별표 3</u>의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④ (생략)</p>	<p>제86조의1(학위수여) ① (현행과 같음)</p> <p>② 학점은행제로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학생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u>별표 3</u>의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은 2027학년도부터 시행한다.</p> <p>② (융합전공 모집중지에 따른 경과조치) 웹툰웹서사콘텐츠 전공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모집을 중지하며, 모집중지된 융합전공을 이수 중인 학생이 신청 당시 융합전공명으로 복수(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p> <p>③ (2027학년도 교육편제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p> <p>1. 학과 통합: 교육편제 개편 이전의 공과대학 자동차공학과, 모빌리티소프트웨어학과 재적생은 공과대학 자동차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p> <p>2. 학과명칭 변경: 교육편제 개편 이전의 미술대학 텍스타일디자인과 재적생은 리빙디자인과 재적생으로 본다.</p> <p>④ (학위수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입학 당시의 학과명으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p>	<p>원격교육원 페이지에 따른 개정</p> <p>교육편제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명기</p>

현행			개정(안)			비고
[별표 2] 학사학위의 종류			[별표 2] 학사학위의 종류			
대학	학과(전공)	학위의 종류	대학	학과(전공)	학위의 종류	
융합전공	(생략) <u>섬유패션국제비즈니스</u> 전공	(생략) <u>섬유패션국제비즈니스학</u> 사	융합 전공	(현행과 같음) <u><삭 제></u>	(현행과 같음) <u><삭 제></u>	
	(생략) <u>미디어콘텐츠전공</u>	(생략) <u>예술학사</u>		(현행과 같음) <u><삭 제></u>	(현행과 같음) <u><삭 제></u>	
	<u>국경학전공</u>	<u>국경학사</u>		<u><삭 제></u>	<u><삭 제></u>	
	<u>한국학전공</u>	<u>한국학사</u>		<u><삭 제></u>	<u><삭 제></u>	
	(생략) <u>인문IT공학전공</u>	(생략) <u>인문IT공학사</u>		(현행과 같음) <u><삭 제></u>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인문기업컨설팅학전공</u>	<u>인문기업컨설팅학사</u>		<u><삭 제></u>	<u><삭 제></u>	
	<u>인문e-culture학전공</u>	<u>인문e-culture학사</u>		<u><삭 제></u>	<u><삭 제></u>	
	(생략) <u>스마트경제통상전공</u>	(생략) <u>경제통상학사</u>		(현행과 같음) <u><삭 제></u>	(현행과 같음) <u><삭 제></u>	
	(생략) <u>HuStar 의료기기공학전공</u>	(생략) <u>공학사</u>		(현행과 같음) <u><삭 제></u>	(현행과 같음) <u><삭 제></u>	
	(생략) <u><신 설></u>	(생략) <u><신 설></u>		(현행과 같음) <u>미래모빌리티자율주행공학</u> <u>전공</u>	(현행과 같음) <u>공학사</u>	
	<u><신 설></u>	<u><신 설></u>		<u>글로벌K-공연콘텐츠전공</u>	<u>예술학사</u>	

현 행			개 정(안)			비고
[별표 3] 학점은행제 학사학위의 종류			[별표 3] 학점은행제 학사학위의 종류			
구분	학과(전공)	학위의 종류	구분	학과(전공)	학위의 종류	원격교육원 폐지에 따른 삭제
계명시민교육원 <u>원격교육원</u>	국어국문학과	문학사	계명시민교육원 <u><삭 제></u>	국어국문학과	문학사	
	경영학과	경영학사		경영학과	경영학사	
	사회복지학과	문학사		사회복지학과	문학사	
	관현악과	음악학사		관현악과	음악학사	
	성악과			성악과		
	작곡전공			작곡전공		
	피아노과			피아노과		
	회화과	미술학사		회화과	미술학사	
태권도학과	체육학사	태권도학과	체육학사			
컴퓨터공학과	공학사	컴퓨터공학과	공학사			

[별표 1] 학생정원표 [학칙 제4조제1항(학생정원) 관련]

2027학년도 학생정원표

(※ 대학-학부-학과, 대학-학과)

성서캠퍼스				성서캠퍼스			
대학	학부, 학과, 계열		입학정원	대학	학부, 학과, 계열		입학정원
인문 국제학 대학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학과	40	공과 대학	도시학부	교통공학과	40
		한국어교육과	30			도시계획학과	40
	영어영문학과	70	생태조경학과			40	
	독일유럽학과	40	스마트모빌리티 공학부		기계공학과	120	
	중국어중국학과	65			자동차공학과	50	
	일본어일본학과	80	화공신소재공학부		화학공학과	80	
	러시아중앙아시아학과	30			신소재공학과	40	
	스페인어중남미학과	35			로봇공학과	50	
	사학과	40	산업공학과		40		
	기독교학과	20	의용공학과		50		
철학과	20	환경공학과	40				
문예창작학과	40						
사범 대학	교육학과		15	체육 대학	체육학부	체육학과	60
	한문교육과	15	사회체육학과			60	
	유아교육과	20	실버스포츠복지학과			40	
	영어교육과	20	태권도학과		60		
	국어교육과	20	스포츠마케팅학과		45		
경영 대학	경영학부	경영학과 ★	135(30)	음악 공연 예술 대학	음악학부	관현악과	43
		관광경영학과	70			성악과	35
	디지털경영학부	경영정보학과	45		피아노과	43	
		경영빅데이터학과	40			연극뮤지컬과	20
회계세무학과	100		무용학과	25			
융합비즈니스학과●(정원외)	0		실용음악음향과	30			
사회 과학 대학	경제통상학부	경제금융학과	110	Keimyung Adams College	국제경영학과 (IB)		40
		국제통상학과	140		국제관계학과 (IR)		
	공공인재학부	행정학과	80	의과대학	의예과 [의학과]		120 [120]
		정치외교학과	40		간호대학		간호학과
	언론광고학부	언론영상학과	70	Tabula Rasa College	자율전공부		284
		광고홍보학과	50		약학		약학부
	사회 과학 대학	사회학과 심리학과 문헌정보학과 사회복지학과 법학과	40	40			
			60	60			
			50	50			
			60	60			
80			80				
경찰행정학과	70						

성서캠퍼스				성서캠퍼스			
대학	학부, 학과, 계열		입학정원	대학	학부, 학과, 계열		입학정원
자연 과학 대학	기초과학부	수학과	20	대학	제약학과(6년제)		30
		통계학과	40		혁신신약학과		
		화학*과	40	소계		4,258(30)	
		생명과학과	60				
	식품보건학부	공중보건학과	50	대명캠퍼스			
식품가공학과		40					
식품영양학과		40					
공과 대학	건축토목공학부	토목공학과	50	미술 대학	미술·디자인학부	회화과	35
		건축학과(5년제)	40			공예디자인과	40
		건축공학과	60			산업디자인과	40
	전자전기공학부	전자공학과	60			패션디자인과	40
		전기공학과	60			리빙디자인과	40
		컴퓨터공학과	80		패션마케팅학과	40	
	컴퓨터공학부	게임소프트웨어학과	40		시각미디어학부	사진영상미디어과	35
		디지털게임공학과	30			영상애니메이션과	45
시각디자인과				50			
				소계		405	
				총계		4,663(30)	

<2027학년도 참고사항>

- ★는 야간강좌 개설학과이며, ()안은 야간강좌 개설대학의 인원수로서 밖의 수에 포함된 숫자임
- Tabula Rasa College 자율전공부 지원 가능 학과: 인문국제학대학, 경영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전 학과(다만, 건축학과, 디지털게임공학과 제외), 체육대학 스포츠마케팅학과, 실버스포츠복지학과, 미술대학 패션마케팅학과, 약학대학 혁신신약학과
- Keimyung Adams College와 약학부의 학과별 표준정원 및 제1전공 배정 기준은 별도로 정함
- 융합비즈니스학과는 정원외 전담학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입학정원을 별도로 정함

[제2안건]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1. 개정사유 및 주요 내용

- 가. 2024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졸업학점 130 → 120학점 하향)에 따른 3학년 편입학생 학점인정 기준 변경
- 나. 고등교육통계 기준에 따른 휴학 종류 및 명칭 통일

2. 신규 조문표

발의부서: 교무·교직원

현 행	개 정(안)	비고
<p>제8조(휴학구분 및 구비서류) ① 휴학의 구분 및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일반휴학</u></p> <p>가. <u>가사사정으로 인한 휴학</u>: 휴학신청서</p> <p>나. <u>질병으로 인한 휴학</u>: 휴학신청서, 종합병원의 진단서(연속 1개월 이상 진단) 원칙</p> <p>다. <u>기타 사유로 인한 휴학</u>: 휴학신청서, 지도교수 동의서</p> <p>2. <u>군입대 휴학</u>: <신 설> 법령에 의한 의무복무자로서 입영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p> <p>3. <u>창업에 의한 휴학</u>: <신 설> 창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 등본이나 사업자 등록증)</p> <p><신 설></p> <p><신 설></p> <p>② <u>일반휴학 중인 학생이 군입대나 창업을 하게 될 경우</u>에는 <u>군입대 휴학신청서나 창업휴학신청서</u>를 제출하여</p>	<p>제8조(휴학구분 및 구비서류) ① 휴학의 구분 및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가사휴학</u>: <u>휴학신청서</u></p> <p>2. <u>질병휴학</u>: 휴학신청서, 종합병원의 진단서(연속 1개월 이상 진단) 원칙</p> <p><삭 제></p> <p>3. <u>군입대 휴학</u>: <u>휴학신청서</u>, 법령에 의한 의무복무자로서 입영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p> <p>4. <u>창업휴학</u>: <u>휴학신청서</u>, 창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 등본이나 사업자 등록증)</p> <p>5. <u>육아휴학</u>: <u>휴학신청서, 임신, 출산 및 육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신확인서, 출산예정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u></p> <p>6. <u>기타휴학</u>: <u>휴학신청서, 관련 증빙 서류</u></p> <p>② <삭 제>휴학 중인 학생이 <u>휴학 사유가 변경될 경우</u>에는 <u>적합한 휴학신청서</u>를 제출하여 휴학사유를 변경하여</p>	<p>고등교육통계 기준에 따른 휴학 종류 및 명칭 통일.</p> <p>기타 사유 명확화(제6호)에 따른 삭제</p> <p>휴학 명칭 통일.</p> <p>휴학 명칭 통일 및 제출서류 명확화.</p> <p>휴학 변경 시 제출 서류 수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휴학사유를 변경하여야 한다.</p> <p>제9조(휴학신청서 제출절차) ① <u>일반</u>휴학 및 군입대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EDWARD 시스템으로 신청한다.</p> <p>② <u>장애 및 질병, 국가고시 합격, 임신, 출산, 육아</u>의 사유로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 휴학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창업에 의한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 휴학신청서를 <u>창업교육센터</u>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0조(휴학신청서 제출기간) ① <u>일반</u>휴학신청서 제출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등록 휴학: 정기시험 종료 익일부터 휴학 해당 학기 개강 후 4주차의 마지막 날(수업일 수 1/4선)까지 등록 후 휴학: 등록 이후 휴학 해당학기 정기시험 시작일 전까지 <p>② 군입대 휴학신청서 제출기간은 입영일 2주전부터 입영일까지를 원칙으로 한다.</p> <p>③ <u>창업에 의한 휴학신청서 제출기간은 제1항의 일반휴학신청서 제출기간과 동일하다.</u></p> <p>제11조(휴학기간 및 휴학연장) ① <u>일반</u>휴학은 1회에 1년(2학기) 이내로 하며, 통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학기간이 끝나기 전에 휴학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야 한다.</p> <p>제9조(휴학신청서 제출절차) ① <u>가사</u>휴학 및 군입대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EDWARD 시스템으로 신청한다.</p> <p>② <u>질병, 육아, 기타</u> 사유로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 휴학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창업에 의한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 휴학신청서를 <u>창업지원단 행정팀</u>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0조(휴학신청서 제출기간) ① <u>가사, 질병, 육아, 창업, 기타</u> 휴학신청서 제출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등록 휴학: 정기시험 종료 익일부터 휴학 해당 학기 개강 후 4주차의 마지막 날(수업일 수 1/4선)까지 등록 후 휴학: 등록 이후 휴학 해당학기 정기시험 시작일 전까지 <p>② 군입대 휴학신청서 제출기간은 입영일 2주전부터 입영일까지를 원칙으로 한다.</p> <p>③ <삭 제></p> <p>제11조(휴학기간 및 휴학연장) ① <u>가사</u>휴학은 1회에 1년(2학기) 이내로 하며,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학기간이 끝나기 전에 휴학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휴학 명칭 통일</p> <p>휴학 명칭 통일</p> <p>자구 수정</p> <p>휴학 명칭 통일</p> <p>제1항 기준에 포함됨에 따라 삭제.</p> <p>휴학 명칭 통일. 학칙과 동일하게 6학기로 수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② 신입학년도 제1학기에는 질병 및 군입대 휴학을 제외하고는 휴학을 허락하지 아니한다.</p> <p>③ 군입대 휴학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군복무 기간이 이를 초과할 경우 휴학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2년간 연장할 수 있다.</p> <p>④ 군입대 휴학 기간 만료 시에 <u>일반휴학</u>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시 <u>제15조제2항의</u> 구비서류<신 설>를 갖추어야 한다.</p> <p>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학생에 대해서는 국가별 비자 심사 기간 차이, 천재지변 등으로 입국할 수 없는 경우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p> <p>제12조(귀향신고) (생략)</p> <p>제13조(등록금 인정) ① 휴학신청 시기에 따른 복학 시 등록금 대체인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일반휴학</u></p> <p>가. 해당학기 수업일수 1/3선 이전 신청자: 등록금 전액 대체인정</p> <p>나. 해당학기 수업일수 1/3 익일부터 1/2선까지 신청자: 등록금 반액 대체인정</p> <p>다. 해당학기 수업일수 1/2선 익일 이후 신청자: 등록금 소멸</p> <p>2. <u>군입대 휴학</u></p> <p>가. 해당학기 수업일수 2/3선 이전 신청자: 등록금 전액 대체인정</p> <p>나. 해당학기 수업일수 2/3선 익일부터 정기시험 종료일 이전까지 신청자</p>	<p>② 신입학년도 제1학기에는 질병 및 군입대 휴학을 제외하고는 휴학을 허락하지 아니한다.</p> <p>③ 군입대 휴학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군복무 기간이 이를 초과할 경우 휴학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2년간 연장할 수 있다.</p> <p>④ 군입대 휴학 기간 만료 시 <u>타휴학</u>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시 <삭 제> 구비서류(<u>군제대 증빙 서류 및 타휴학 관련 서류</u>)를 갖추어야 한다.</p> <p>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학생에 대해서는 국가별 비자 심사 기간 차이, 천재지변 등으로 입국할 수 없는 경우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p> <p>제12조(귀향신고) (현행과 같음)</p> <p>제13조(등록금 인정) ① 휴학신청 시기에 따른 복학 시 등록금 대체인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가사, 질병, 창업, 육아, 기타 휴학</u></p> <p>가. 해당학기 수업일수 1/3선 이전 신청자: 등록금 전액 대체인정</p> <p>나. 해당학기 수업일수 1/3 익일부터 1/2선까지 신청자: 등록금 반액 대체인정</p> <p>다. 해당학기 수업일수 1/2선 익일 이후 신청자: 등록금 소멸</p> <p>2. <u>군입대 휴학</u></p> <p>가. 해당학기 수업일수 2/3선 이전 신청자: 등록금 전액 대체인정</p> <p>나. 해당학기 수업일수 2/3선 익일부터 정기시험 종료일 이전까지 신청자</p>	<p>군입대 휴학에서 타휴학으로 변경 기준 명확화</p> <p>휴학 명칭 통일</p>

현행	개정(안)	비고																																																																																								
<p>1) 성적취득 희망하는 경우: 등록금 소멸 2) 성적취득 희망하지 않는 경우: 등록금 전액 대체 인정</p> <p>② (삭제 2021. 6. 7.) ③ 등록금을 대체인정 받은 학생이 자퇴하는 경우에는 휴학당시 수업한 일수와 복학하여 자퇴 신청 시까지 수업한 일수 중에서 수업일수가 많은 것을 기준하여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반환한다.</p> <p>제14조(군입대 휴학생의 성적 인정) (생략) 제15조(복학 및 재입학) ① 복학은 당해 학기 학기 개시일 전에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u>일반휴학</u> 및 군입대 휴학자(주민등록초본,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전역증 사본 중 1부 첨부)의 복학신청은 EDWARD 시스템으로 한다. ③ 질병휴학자는 건강진단서를 첨부한 복학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p>	<p>1) 성적취득 희망하는 경우: 등록금 소멸 2) 성적취득 희망하지 않는 경우: 등록금 전액 대체 인정</p> <p>② (삭제 2021. 6. 7.) ③ 등록금을 대체인정 받은 학생이 자퇴하는 경우에는 휴학당시 수업한 일수와 복학하여 자퇴 신청 시까지 수업한 일수 중에서 수업일수가 많은 것을 기준하여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반환한다.</p> <p>제14조(군입대 휴학생의 성적 인정) (현행과 같음) 제15조(복학 및 재입학) ① 복학은 당해 학기 학기 개시일 전에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u>가사, 육아, 창업, 기타 휴학</u> 및 군입대 휴학자(주민등록초본,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전역증 사본 중 1부 첨부)의 복학신청은 EDWARD 시스템으로 한다. ③ 질병휴학자는 건강진단서를 첨부한 복학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 ⑥ (현행과 같음)</p>	<p>휴학 명칭 통일</p>																																																																																								
<p>제50조(학점인정) 편입학생의 학점인정은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data-bbox="125 1161 987 1458"> <thead> <tr> <th colspan="2">편입학시기</th> <th colspan="2">2학년</th> <th colspan="2">3학년</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졸업학점</td> <td>120</td> <td>130/165</td> <td><신 설></td> <td>130/165</td> </tr> <tr> <td rowspan="5">인정학점</td> <td>공통교양과목</td> <td>12</td> <td>12</td> <td><신 설></td> <td>12</td> </tr> <tr> <td>균형교양과목</td> <td>15</td> <td>15</td> <td><신 설></td> <td>15</td> </tr> <tr> <td>일반교양과목</td> <td>3</td> <td>6</td> <td><신 설></td> <td>26</td> </tr> <tr> <td>전공과목</td> <td>-</td> <td>-</td> <td><신 설></td> <td>(12)</td> </tr> <tr> <td>타전공과목</td> <td>-</td> <td>-</td> <td><신 설></td> <td>12</td> </tr> <tr> <td colspan="2">계</td> <td>30학점</td> <td>33학점</td> <td><신 설></td> <td>65학점</td> </tr> </tbody> </table> <p>()안의 숫자는 전공 최대 인정 학점수</p>	편입학시기		2학년		3학년		졸업학점		120	130/165	<신 설>	130/165	인정학점	공통교양과목	12	12	<신 설>	12	균형교양과목	15	15	<신 설>	15	일반교양과목	3	6	<신 설>	26	전공과목	-	-	<신 설>	(12)	타전공과목	-	-	<신 설>	12	계		30학점	33학점	<신 설>	65학점	<p>제50조(학점인정) 편입학생의 학점인정은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data-bbox="1012 1161 1874 1458"> <thead> <tr> <th colspan="2">편입학시기</th> <th colspan="2">2학년</th> <th colspan="2">3학년</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졸업학점</td> <td>120</td> <td>130/165</td> <td><u>120</u></td> <td>130/165</td> </tr> <tr> <td rowspan="5">인정학점</td> <td>공통교양과목</td> <td>12</td> <td>12</td> <td><u>12</u></td> <td>12</td> </tr> <tr> <td>균형교양과목</td> <td>15</td> <td>15</td> <td><u>15</u></td> <td>15</td> </tr> <tr> <td>일반교양과목</td> <td>3</td> <td>6</td> <td><u>21</u></td> <td>26</td> </tr> <tr> <td>전공과목</td> <td>-</td> <td>-</td> <td><u>(12)</u></td> <td>(12)</td> </tr> <tr> <td>타전공과목</td> <td>-</td> <td>-</td> <td><u>12</u></td> <td>12</td> </tr> <tr> <td colspan="2">계</td> <td>30학점</td> <td>33학점</td> <td><u>60학점</u></td> <td>65학점</td> </tr> </tbody> </table> <p>()안의 숫자는 전공 최대 인정 학점수</p>	편입학시기		2학년		3학년		졸업학점		120	130/165	<u>120</u>	130/165	인정학점	공통교양과목	12	12	<u>12</u>	12	균형교양과목	15	15	<u>15</u>	15	일반교양과목	3	6	<u>21</u>	26	전공과목	-	-	<u>(12)</u>	(12)	타전공과목	-	-	<u>12</u>	12	계		30학점	33학점	<u>60학점</u>	65학점	<p>2024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졸업학점 하향)에 따른 3학년 편입생 학점인정 기준</p>
편입학시기		2학년		3학년																																																																																						
졸업학점		120	130/165	<신 설>	130/165																																																																																					
인정학점	공통교양과목	12	12	<신 설>	12																																																																																					
	균형교양과목	15	15	<신 설>	15																																																																																					
	일반교양과목	3	6	<신 설>	26																																																																																					
	전공과목	-	-	<신 설>	(12)																																																																																					
	타전공과목	-	-	<신 설>	12																																																																																					
계		30학점	33학점	<신 설>	65학점																																																																																					
편입학시기		2학년		3학년																																																																																						
졸업학점		120	130/165	<u>120</u>	130/165																																																																																					
인정학점	공통교양과목	12	12	<u>12</u>	12																																																																																					
	균형교양과목	15	15	<u>15</u>	15																																																																																					
	일반교양과목	3	6	<u>21</u>	26																																																																																					
	전공과목	-	-	<u>(12)</u>	(12)																																																																																					
	타전공과목	-	-	<u>12</u>	12																																																																																					
계		30학점	33학점	<u>60학점</u>	65학점																																																																																					

현행	개정(안)	비고
① ~ ⑧ (생략)	① ~ ⑧ (현행과 같음) 부칙 이 개정세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변경